

대법원 2018. 10. 12 선고 2018다240714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의소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8. 10. 12 선고 2018다240714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17 선고 2017나40916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주식회사 A

피고, 상고인B

판결 선고2018. 10. 12.

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7나40916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.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김재형

대법관조희대

대법관민유숙

주심대법관이동원